


PCBC (B-Mark : 폴란드시험인증기관)

1. 개요

<p>■ 정의</p>	<p>Polskie Centrum Badan I Certyfikacji (PCBC) : Polish Center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p>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폴란드의 강제인증제도 (B-Mark) - 2004년 폴란드의 EU가입에 따라, 강제인증제도는 폐지되고, EU의 강제인증제도인 CE마킹을 따른다. - 현재의 PCBC는 폴란드내의 인증기관중 하나로서의 기능을 유지 - 현재 폴란드에서 B-Mark를 받아 폴란드 시장의 진출에 다소 도움이 되긴 하지만, 강제 또는 의무사항은 아님
<p>■ 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skie Centrum Akredytacji (PCA) : Polish Center for Accreditation : 폴란드인증센터 ; www.pca.gov.pl - Urzad Ochrony Konkurencji I Konsumentow (UOKIK) : Office of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 경쟁 및 소비자보호 사무소 ; www.uokik.gov.pl
<p>■ 대상품목</p>	<p>- 전기.전자제품등 CE마킹이 적용되는 전 품목</p>
<p>■ 적용국가</p>	<p>- 폴란드</p>
<p>■ 적용규격</p>	<p>- EN</p>
<p>■ 인증마크</p>	

■ 기타

- 폴란드는 CE마킹제도를 따르므로, 인증절차는 CE마킹과 동일
- Polish Center for Accreditation (PCA : 폴란드인정센터)의 역할
: 인증기관의 인가, 검사기관의 인가, 시험실(Laboratories)의 인가,
인가된 기관 및 시험실 감독, 인가된 기관 및 시험실 리스트 관리

2. 인증획득 절차

폴란드의 전기안전마크인 B-Mark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PCBC 이다.

: Polskie Centrum Badan I Certyfikacji (PCBC)
(Polish Centre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

가. 시험증명서를 제출하는 신청자는 아래와 같다.

- 외국의 제조업자(직접)
- 외국의 제조업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그의 대리자를 경유하여
- 폴란드의 수입업자

나. 신청자는 아래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
- CB 시험증명서
- CB 시험보고서
- 조작설명서
- 서비스 설명서
- 시험보고서[RFI(무선주파방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다. 라이선스 전의 검사가 요구된다. 요구사항은 CENELEC의 요구사항과 동등하다.

라. Follow-up공장검사는 제조업자가 PCBC에 의해서 승인된 기관에 의해 증명된 품질보증 시스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구된다.

마. 문제가 있을 경우 Follow-up 시험용 샘플이 채취된다. 이 샘플의 시험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바. 라이선스는 3~5년간 유효하다. 단, 부적합으로 인해 라이선스가 이미 취소된 경우, 또는 신청자로부터 취소의 요구가 있었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 국가심사등록기관(NCB)의 결정에 대한 불만 신청서의 제출처는 다음과 같다.

Komitet Odwoławczy przy Radzie c/s Baden I Certykacji(시험·증명종합고충위원회)

아. 협회의 마크는 외국의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자. 협회의 마크는 IEC 또는 CEE의 안전규격은 물론, 이것에 더하여 아래의 사항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혼신, 소음레벨, 건강에 미치는 영향등)